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‘상표의 사용’ 행위에 ‘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’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항제1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